

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

□ 총 25건	정상추진	개정 의견	개정 및 이행 권고 의견	폐지의견	기타
	0	11	12	1	유보 1

안전	조례명	시행일	상임위	평가의견	비고
1	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	2012.06.20. (일부개정 2019.12.30.)	기획경제	개정 및 이행 권고	
2	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	2015.09.30.	기획경제	개정 및 이행 권고	
3	(구)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※ (현)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	2019.07.10. (전부개정 2020.07.01.)	기획경제	유 보	
4	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2009.06.01.	행정문화	개 정	
5	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15.07.30.	행정문화	개정 및 이행 권고	
6	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12.30.	행정문화	개정 및 이행 권고	
7	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	2016.06.10.	행정문화	개 정	
8	충청남도 학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10.20.	행정문화	개정 및 이행 권고	
9	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	2010.11.10. (전부개정 2014.12.30.)	행정문화	개 정	
10	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	2009.04.15.	복지환경	개정 및 이행 권고	
11	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4.07.10. (일부개정 2019.05.30.)	복지환경	개 정	
12	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	2015.10.30.	복지환경	개정 및 이행 권고	
13	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09.30.	복지환경	개정 및 이행 권고	
14	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02.23.	농수산해양	개 정	
15	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02.22.	농수산해양	개 정	
16	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	2016.06.30.	농수산해양	개 정	
17	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	2013.09.25.	안전건설소방	개 정	
18	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	2016.04.11.	안전건설소방	개정 및 이행 권고	
19	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	2016.10.11.	안전건설소방	개정 및 이행 권고	
20	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	(제정) 1993.12.27. (일부개정 2020.10.05.)	안전건설소방	폐 지	
21	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	2001.03.30.	교 육	개 정	
22	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3.09.23.	교 육	개 정	
23	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	2015.04.10.	교 육	개정 및 이행 권고	
24	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15.12.30. (일부개정 2020.06.10.)	교 육	개정 및 이행 권고	
25	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2016.05.01.	교 육	개 정	

붙임

평가결과 요약

연번	평가대상 조례	평가결과	평가의견	비고
1	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	개정	· 법령위배 소지(소관사무 원칙 충돌) 해소 등 - (제6조) 시장·군수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보고의무 등	
		이행 권고	· 위촉위원 법정성비 준수(남성 69%) ·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재원확보 노력 필요 - '20년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25%	
2	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	개정	· 입법체계, 문장, 용어 등 개정 검토 필요 - (제2조) 법률 재규정 사항 삭제 등	
		이행 권고	·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기본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- 현재 산업재산권 지원 중심 - 충남 콘텐츠 R&BD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 하여 저작권 진흥방안 접목 필요 · 학생 대상 지식재산교육(제8조), 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(제10조) 등 활성화 필요 ※ '21년 제3차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시, 도 현실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수립 필요	
3	(구)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※ (현)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	유보	· 2020. 7. 1. 전부개정으로 평가의견 유보 ※ (구) 조례에 대한 평가의견 - 법령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등 개정 필요 -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필요(제17조 이하)	법령 위임 조례
4	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협의회 규정 삭제 검토 필요(제5조~제10조) -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·운영은 국가 사무(기관위임사무)로 관련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	
5	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	개정	·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정의 확대(제2조) ·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(제5조)	
		이행 권고	· 합동추모제 이외의 추모·위령사업 추진방안 마련 필요(제5조)	

6	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정의규정 신설 등 개정검토 필요	
		이행 권고	- 우수공예품 지정절차 개선 검토(제3조, 제5조, 제6조) - 현재 조례에 따른 공예심사위원회가 아닌 충남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(훈령)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- 심사 시 구성되는 위원회 위촉위원 법정성비 준수 필요('19년 남성 100%)	
7	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- 사회적경제기업, 사회적경제제품, 공공기관 정의 규정 명확성 제고(제2조)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와의 체계적 연관성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“예비사회적기업”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- 구매촉진시책 수립·시행 규정(제4조) 삭제 또는 개정하여 개별 규정의 명확성 제고 필요	
			※ 기타 의견 - 사회적경제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된 관련 3개 조례*는 체계적 연관성이 약함 -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원칙 및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, 필요시 정책분야별 개별 조례를 제·개정하여 관련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* ('09)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('16)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례 ('19)사회적경제기금 설치 관련 조례	
8	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- 법령 단순 재규정 조항 삭제 등 -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규정은(제6조~제8조)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동일 규정	
		이행 권고	- 종합계획 수립 필요(제3조) - 향교·서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미수립 ※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 관련 시행계획에 향교·서원 관련 계획 포함 - 자체사업 개발 필요(제4조) - 현재 추진 중인 향교·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임 - 이외에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자체사업 없음	

9	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	개정	· 공공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(제2조) - “조례 재(개)정” → “조례 제정·개정·폐지” 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 - 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” → “교통영향평가(제7조제4항제2호)” · 조례상 주요 용어 통일적 사용 필요 - “갈등” → “공공갈등”	
10	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	이행 권고	· 2012년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자체사업 없으나, 포스트코로나 시대 등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목적에 상응하는 자체사업 추진방안 마련 촉구	
		개정	· 도 차원의 자체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필요(지원대상자 범위 및 결정권한 등)	
11	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지방연구원의 독립성,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연구원법 위배소지(법 제5조제1항, 제12조제1항) 및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검토 필요 ※ 연구원내 기관설치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 규정 사항	
			※ 기타 의견 · 부칙에 규정된 독립법인화 추진시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 고려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	
12	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	개정	· 위탁규정 개정 검토 필요(제6조) - 「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토록 개정 필요 · 충남 특성을 반영한 예비노년세대 일자리 발굴사업 등 마련 필요(제1조, 제4조) ※ 일자리진흥원 중장년층(40~59세) 재취업 집중 지원사업 · 예비노년세대 범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※ 현재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포함	
		이행 권고	· 위촉위원 법정성비 준수(남성 71%)	
13	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개정(제7조) : 전문가 소진예방 지원 미추진 · 준용규정 삭제(제10조) : 전담기구, 위탁규정 없음에도 관련 조례 준용토록 함	
		이행 권고	·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필요(제8조) ※ 현재 협의회 미구성	

14	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법령위배소지 있는 통합마케팅조직 운영방안 등에 관한 규정(제6조) 개정 필요 - 통합마케팅조직의 사업이익 배분방식 및 통합마케팅조직과 농업인 등과의 계약방식에 대한 강행규정은 법률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위배소지(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) · 위원회 심의 규정 검토필요(제7조) - 관련법 개정(2014)으로 충남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칭 변경 필요 - 다만, 현재 해당 사안은 충청남도 원예산업발전 협의회(2016년구성)에서 심의	
15	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법령 단순 재규정 조항 삭제 ·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례명 및 제1조 등 개정 필요	
16	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	개정	· 지원범위 개정 검토 필요(제4조) - 잠함병으로 잠수어업을 할 수 없는 잠수어업인 지원 필요성이 더 크므로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·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정 필요(제2조~제4조 등)	
17	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	개정	·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 조문 이동 필요(제5조 이하) · 법령상 의무를 단순 재기한 규정 삭제 필요(제8조)	법령 위임 조례
18	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	개정 이행 권고	· 어린이통학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정 주체 근거 규정 마련 필요 ·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수립 대상이 어린이통학로 인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명확히 할 필요 ※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 : 시장·군수 (도로교통법 제12조) · 조례상 규정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필요(제5조) ※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사업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「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」 및 「연도별 시행계획」에 반영 · 실태조사 이행 필요(제6조) ※ 기타 의견 ·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검토 필요 · 미국의 안전한 통학로(SRTS) 프로그램 참고 - 도보통학 가능지역 설정 - 안전통학로지도 작성, 제공 등	

19	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	개정	· 법령위배 소지 규정 개정 검토 필요(제5조제1항제2호) - 옥외행사비 지원받는 (민간)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규정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건 부과 규정으로 개정 검토 필요	
		이행 권고	· 안전관리계획 신고제도와 「사전안전영향평가제도」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법령위배소지, 실효성 등을 비교·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	
20	충청남도농어촌주택 사업운용관리조례	폐지	·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없으며, 향후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성, 적정성 없으므로 폐지 필요	
21	충청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관한조례	개정	· 법령개정사항 반영, 법령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등을 위한 개정 검토필요 · 명확성 원칙에 따라 경비부담 규정 개정 필요(제5조)	법령 위임 조례
22	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개정	· 법령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(제6~제10조),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(전부)개정 필요	
23	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	개정	·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규정 개정 필요(제4조) - “매년 계획 수립” → “5년 단위 기본(종합) 계획, 매년 시행계획 수립” · 조례내용의 적정성, 현실부합성을 고려하여 작은 학교 정의(제2조), 지원방법 규정(제7조) 개정 - (제2조) “공립학교” → “학교” - (제7조) 작은 학교에서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일정기간 지원근거 명시	
		이행 권고	·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절차 이행 필요(제4조제2항) · 위촉위원 법정성비 준수 필요(남성 77.8%)	
24	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	개정	· 실효성 없는 교육감 및 도지사의 책무규정 등 개정 필요(제4조, 제5조 내지 제7조) ·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체계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개정 필요	
		이행 권고	· 교육청과 도청의 체계적 협력책무 이행 또는 각 기관이 별도의 조례를 제·개정하여 각자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방안 등 검토 필요	
			※ 기타 의견 · 본 조례는 학생 노동인권보호 관련 조례로 개정하고 필요시 청소년 대상 관련 조례는 도청 소관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	
25	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개정	·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(제6조)의 법령위배소지 해소, 용어 및 법체계 정비 등을 위한 (전부)개정 검토 필요	